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5 선고 2023가단5314094(본소), 2023가단5515514(반소) 판결
[대여금 · 보증채무금]

전 문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포럼

담당변호사 강병철

피고(반소원고) B

변 론 종 결 2024. 4. 24.

판 결 선 고 2024. 6. 5.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15.부터 2024. 6. 5.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본소, 반소를 통틀어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80%는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에게 38,433,618원 및 그중 3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4. 4. 24.부터, 나머지 금 8,433,618원에 대하여는 2021. 8. 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4,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3. 8. 21. 1000만 원, 2014. 4. 24.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했다.

나. 2015. 3. 16. C이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며 법정 최고 이자를 물고 2015년 4월 16.일 위 차용금을 지급한다는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되었다. 이 사건 차용증에는 원고와 D이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금 삼천만 원은 E대중회 F 소송 건으로 변호사 G에게 직접 송금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2015. 3. 16. G에게 3000만 원을 지급했다.

2. 가.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30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다음 ①~⑦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① 피고는 2013. 7. 4. 원고의 아들 H의 소송비용 464만 원을 대납했다. ② 원고가 C에게 입금하라고 해서 2014. 1. 29. 500만 원을 C에게 지급했다. ③ 원고가

변호사비용을 대납하라고 해서 피고가 2014. 6. 23. 변호사비용 250만 원을 대납했다. ④ 원고가 부탁해서 피고는 2018. 2. 15. 50만 원을 원고의 아들 H 계좌에 입금했다. ⑤ 피고는 2019. 10. 10. 원고의 형사사건 수임료 1000만 원을 대납했다. ⑥ 피고는 원고가 부탁해서 2021. 10. 13. 2,001,000원을 원고의 아들 I 계좌에 입금했다. ⑦ 위 돈은 모두 원고가 피고에게 빌린 돈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송금하는 것은 소비대차, 증여, 투자, 채무 변제, 단순한 보관이나 전달의 위탁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따라 행해질 수 있으므로 금전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피고는 송금한 돈이 원고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개개의 송금 내역에 관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여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에 따라 원고가 보증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증채권과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다음 ①, ②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증채권이 변제로 소멸했다고 주장한다. ①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E대중회(이하 ‘이 사건 종중’) 회장이었던 C은 F가 불법적인 방법과 절차로 회장으로 선임되는 결의를 하자 이에 관해 원고, 피고 등과 총회결의무효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② 피고는 C에게 자신을 차기 회장으로 추천하여 지지해 주면 일단 피고가 소송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고 나중에 피고가 지출한 비용을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보전받기로 했으나 이 사건 종중 회장 지위에 대한 법적 다툼으로 인해 이 사건 종중 명의 차용증을 작성할 수 없었기 때문에 추후 이 사건 종중이 부담할 비용을 확인하는 취지에서 형식적으로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된 것이다. 피고가 변호사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1년 후인 2016. 3. 16.경 피고는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위 3000만 원을 모두 변제받았다.

갑 제4~6호증, 을 제4,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①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차용증에는 “금 삼천만 원은 E대중회 F 소송 건으로 변호사 G에게 직접 송금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와 피고는 F와 관련한

총회결의무효 소송의 당사자로서 소송을 진행했던 점, ㉔ 피고는 총회결의무효 소송 등과 관련해 본인 명의로 3000만 원을 변호사 G에게 지급한 점, ㉕ ㉖ 갑 제4호증(금전출납부)은 피고가 이 사건 총중 회장으로 당선된 이후 2016년부터 2019년 12월 28.일까지의 감사와 결산을 위해 작성된 자료인 점, ㉗ 갑 제4호증에는 2016. 3. 16. 'F 총회결의무효 및 배임횡령고소 2건'으로 인해 G 변호사에게 이 사건 총중이 3000만 원을 지출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㉘ 금전출납부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용증은 피고가 추후에 이 사건 총중으로부터 반환받을 것을 전제로 G 변호사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되 이 사건 총중이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C, D, 원고가 책임을 진다는 취지에서 작성되었고 이 사건 총중은 2016. 3. 16.경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변제했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는 갑 제4호증의 기재는 피고가 2016년 3월 16.일 이 사건 총중에 3000만 원을 청구한 내역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은 2019. 12. 28.경 작성되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총중에 돈을 청구한 내역이 지출 란에 기재되었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다음 ㉙~㉛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므로 이를 이 사건 대여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㉙ 이 사건 총중 대표자였던 C은 이 사건 총중 소유 여주시 J 토지를 K 등에게 매매했는데 이 사건 총중 내부 분쟁으로 K 등에게 소유권이전을 하지 못하자 C이 2014. 9. 17. 원고와 피고에게 대위변제에 대한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고 K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 채무 1억 5000만 원을 원고와 피고가 연대보증하면서 2014. 9. 30.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대위변제금을 이 사건 총중 회장과 C이 원고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㉚ 피고가 2014. 9. 25. K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고 원고가 2014. 10. 13. K에게 7000만 원을 변제했고 K는 원고와 피고에게 이 사건 총중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 채권 1억 5000만 원을 양도했다. ㉛ 원고는 피고가 대위변제한 3000만 원 부분에 대한 채권 4500만 원을 피고에게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고 단독으로 이 사건 총중을 상대로 지급명령(청구금액 1억 5000만 원)을 신청했고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㉜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아무런 통지 없이 L에게 위 지급명령에 따라 압류·추심한 채권을 양도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대위변제한 부분에 해당하는 4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K에게서 양수한 이 사건 총중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 채권

1억 5000만 원 중 4500만 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와 피고의 처 M이 2014. 3. 6. C와 여주시 N 토지에 관해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C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할 수 없어 피고가 M을 대리해 C에 대한 계약금 반환 채권 4000만 원을 원고에게 양도했는데 위와 같이 채권을 양도한 이유는 이 사건 대여금과 위 계약금 반환 채권과 상계하기로 하고 양도한 것이므로 이 사건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8호증의 1~5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와 M이 C와 여주시 N 토지에 관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피고가 M을 대리해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과 관련된 채권 4000만 원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 3000만 원과 상계하기로 합의하고 위와 같이 채권 4000만 원을 양도했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고는 피고가 2019년 11월 이 사건 종종 회장으로 총회를 개최하면서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O로부터 7,755,000원을 빌리면서 원고에게 위 돈을 대신 받아달라고 해서 원고가 O로부터 7,755,000원을 받았는데 피고가 7,755,000원을 변제하지 않자 2021. 11. 4. 원고가 O에게 그때까지의 원리금 합계 8,433,618원(원금 7,755,000원+이자 678,618원)을 대신 변제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구상금 8,433,618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7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① O는 2021. 2.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가합10144호 사건에서 피고와는 2019년도 정기총회 준비와 관련해 대화조차 없었고 원고의 회사에 820만 원가량을 빌려주었다고 증언한 점, ② O가 원고에게 교부한 영수증에는 대여금을 회장에 출마한 피고가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 원고(회사)의 통장으로 입금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원고가 채무자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갑 제8, 9호증은 이 사건 소 제기 후에 작성된 문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8, 9호증은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O로부터 7,755,000원을 차용했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는 반소에서 원고가 이 사건 차용증에 따라 보증책임을 부담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중중이 2016. 3. 16.경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해 주채무가 소멸했다.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3. 9. 15.부터 피고가 이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해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6. 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정우